

光州廣域市西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

審 查 報 告

1996年 5月

企劃總務委員會

1. 審査經過

가. 提案日字 : 1996年 4月29日 光州廣域市 西區廳長 提出
및 提案者

나. 回附日字 : 1996年 4月 29日

다. 上程日字 : 第55回 西區議會(臨時會) 會期中
第2次 企劃總務委員會(1996年 5月 8日 上程議決)

2. 提案說明의 要旨

(提案說明者 : 地方稅課長 鄭 玉 鉉)

가. 提案 事由

○ 지방세 법령 개정에 따라 구세조례중 개정하여야 할 사항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주민의 편의 제공 및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로 구 재원의 확충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主要骨子

○ 소액지방세의 범위규정(세무공무원의 현금징수 허용한도)
: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이 50만원 이하인 구세

- 시가표준액의 결정 :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던 것을 "시가표준액"으로 개정
- 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
 - 농수산물 유통시설 중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축협중앙회 및 임협중앙회가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75 경감
- 3. 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 (專門委員 朴 鍾 根)
 - 본 조례안은 세무공무원의 현금 수납 범위를 납세고지서 1매당 50만원 이하의 소액 지방세로 한정하여 징수함은 납세자의 편의 제공 및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성과가 예상되지만 공무원의 현금 취급에 따른 일일결산, 지도감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며
 - 농수산물 유통시설 중 농·수·축·임협중앙회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의 경우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75 경감 대상을 신설한 조항은 설치 목적에 부합된다는 의견임.
- 4. 質疑 및 答辯 要旨 : 생략
- 5. 討論 要旨 : 생략
- 6. 審査 結果 : 원안 가결
- 7. 少數 意見 要旨 : 없음
- 8. 其他 事項 : 없음

광주광역시시구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시구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시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그 사무의 내부위임규정'을 '구사무의 위임규칙'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 지방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소액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만원 이하인 구세를 말한다.

제7조 제1항중 '지방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9조 제1항중 '법 제266조 제3항 및 제4항에서'를 '법 제266조 제3항에서'로 한다.

제21조 제2항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 ①법 제266조제3항에서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
2.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완료되기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 -----</p>
<p>② - ⑤ (생략)</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제19조 (구판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 ① 법 제266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구판사업용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이라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p>	<p>제19조 (구판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 ① 법 제266조제3항----- ----- ----- -----</p>
<p>1 - 4 (생략)</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1조 (과세표준)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령제 80조의 규정에 의한 <u>과세시가표준액</u>으로 한다.</p>	<p>제21조 (과세표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시가표준액</u>----- -----</p>
<p>제28조 (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 (신설)</p>	<p>제28조 (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 ① 법 제266조제3항에서 '그 사업에 <u>직접사용하는 부동산</u>'이라 함은 다음 것을 말한다. <u>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u> <u>2. 보관·가공·무역 및 부속사업용 토지</u></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p> <hr/> <p>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p> <hr/>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p> <hr/> <p>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p> <hr/>